

의안번호	2125865
의 퇴 인	이동주의원
회 답 일	2024. 1. 10.
추 계 번호	23D5004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7조(보수에 관한 규정)	현행법령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상한시간 적용의 예외에 '보좌직원 중 국회의원의 전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'를 추가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7조(보수에 관한 규정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상한시간 적용의 예외 확대(안 제47조)

- 현행법 시행령¹⁾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상한은

1)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(시간외근무수당)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33의 일반임기제 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, ③ (생략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,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(이하 "현업공무원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(이하 "시간외근무명령"이라 한다)을 하는 경우
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

3.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

⑤~⑨ (생략)

1일에 4시간, 1개월에 57시간이며,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한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의 예외로 재난이나 재해 발생 등으로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

- 개정안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한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의 예외에 「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2)에 따른 보좌직원 중 국회의원의 전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, 보좌직원에게 추가 지급될 시간외근무수당만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법안 시행 이후 국회의원의 전용차량을 운전하는 보좌직원의 시간외 근무 시간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한예슬	오명희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한예슬	02-6788-4831	yeseulhan@nabo.go.kr

2) 「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(보좌직원)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(이하 "보좌직원"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.